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공공임대주택과 임시 거주지로 제공할 인근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모집 유예 가능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재정비 사업 이전에 모집을 유예하기 어려워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저하됨에 따라, 재정비 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전에도 모집 유예가 가능하도록 시점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중 “위하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을 유예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소재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전이라도”로 한다.

###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① ~ ④ (생략)</p> <p>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규칙 제14조제2항을 포함한다)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비사업 대상 재공급주택과 해당 지역 및 연접지역의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유예할 수 있다.</p>	<p>제7조(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 ----- -----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을 유예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소재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전이라도 -----.</p>